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590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현행 제도 및 운영 현황	7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9
3.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	12
4. 검토 사항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2. 제안영월일 : 2025. 7. 21.
3. 회부연월일 : 2025.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도 실종아동등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을 신설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원확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u>제11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u>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① ----- ----- ----- <u>제11조 및 제14조의2</u> ----- ----- ----- <u>. 다만,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14조의2(신원불상변사자의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① 경찰청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이하 “신원불상변사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인지 확인</u>

현행	개정안
<신설>	<u>전정보 데이터베이스·제14조의3에 따른 신원불상변사자 데이터베이스 및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다.</u> 1. <u>신원불상변사자의 실종아동 등 여부를 확인하고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호자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경우</u> 2.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신원불상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u> 3. <u>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u> ② <u>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색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4조의5(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검색·회보) ① 검사기관</u>

현행	개정안
	<u>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u> <u>1.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u> <u>2.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실종아동등 발견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u> <u>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여야 한다.</u> <u>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검색결과에 회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령령으로 정한다.</u> <u>제14조의6(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삭제) ① 검사기관의 장은 신원불상변사자의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제14조의3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u> <u>② 검사기관의 장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u>

1. 현행 제도 및 운영 현황

현재 변사체의 유전정보는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라 경찰·검찰이 검시¹⁾ 과정에서 채취하고, 「디엔에이법」 제7조에 의거 범죄현장 시료로 간주하여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본래 범죄수사 목적에 한정된 제도이므로, 신원불상변사자의 유전정보가 실종아동 식별에 활용될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²⁾

<최근 3년간 신원불상변사자 발생 건수 및 신원확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4	2023년	2022년
합계	65	75	64

1) 현재 국과수가 보관하는 신원불상변사자의 유전정보의 경우, 경찰이 형소법에 따라 변사체를 검시할 때 디엔에이법을 의율하여 채취한 것으로, 변사체의 유전정보 채취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음.

-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디엔에이법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1.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2. 범죄의 피해자 신체의 내·외부에서 발견된 것
3.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된 것
4.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

2) 범죄현장 DB는 타 유전정보 DB와 연계 불가하며 △범죄와 무관하거나 △신원이 확인된 유전정보는 수록할 수 없도록 규정

- **디엔에이법 제15조(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디엔에이법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② 제1항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얻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이 변사 등 사망한 채 발견한 통계>

(단위 : 명)

구 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24년	5	43	82
'25년 6월	4	15	30

※ 자료: 경찰청

이로 인해 변사자 유전정보는 일정 기간 후 폐기되거나 범죄와 무관한 경우 활용이 제한되어, 실종아동 발견 목적에 활용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법은 가족의 신청을 받아 채취한 유전정보만을 실종아동 DB에 보관하며, 이 정보는 실종아동 발견 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어 (제12조) 변사자 유전정보와 실종아동 DB를 상호 연계·대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안 제12조)

개정안은 누구든지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기존 제11조뿐만 아니라 안 제14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나.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신원불상변사자가 실종아동등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채취·운반·보관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별도 규칙³⁾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3) 「변사사건 처리 규칙」(경찰청 훈령)

제17조(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 ① 변사 사건 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소지품 확인과 수사
2. 유족 등 관계자 확인과 수사
3. 지문 감정 결과 분석과 수사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변사자의 신원이 즉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디엔에이(DNA) 감정 결과 분석과 수사
2. 치과 진료·수술 기록 등 신체적 특징점 수사
3. 유류품 소지 경위나 변사자 행적 등 보강 수사
4. 변사자 수배
5. 실종 등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수사 등

제18조(아동 등 지문 미등록 변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 아동 등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변사자는 유족 등 관계자 조사, 디엔에이(DNA) 감정, 기존 진료 기록과 검시·부검 결과의 대조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 신원불상변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안 제14조의3)

검사기관이 채취한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실종아동등 발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데이터베이스 연계 검색(안 제14조의4)

기존 실종아동등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신원불상변사자 데이터베이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계 검색을 허용함으로써 종합적인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안 제14조의5)

검사기관의 장이 데이터베이스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⁴⁾를 수록하거나, 실종아동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실종아동등 발견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회보 시에 명시할 사항을 규정하며, 그 검색 및 검색 결과의 회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임.

4)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

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안 제14조의6)

검사기관의 장이 신원불상변사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삭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폐기절차를 체계화하려는 것임.

3.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

실종아동등 중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사례의 경우 생사확인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미해제 실종아동등이 7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유전자검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실종아동등과의 대조검색이 가능하다면, 장기실종 사례의 해결과 가족들의 고통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됨.⁵⁾⁶⁾

해외의 경우, 독일은 실종자·신원미상자 관리를 위해 별도의 실종자 데이터뱅크를 설치·운영하여 경찰정보시스템에 실종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 데이터뱅크에 입력되어 필요한 경우 실종자와 특징적 요소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은 FBI의 CODIS(DNA 색인연계시스템, Combined DNA Index System)에 ‘Unidentified Human Remains’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여 실종자 가족 DNA와 교차

5)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로 2025년 6월까지 유전자검사를 통해 1,024건의 신원확인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근거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변사사건 처리 규칙」(경찰청 훈령)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6) 경찰청은 특히 장기 실종된 아동의 경우 입양이나 보호 과정에서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기도 하여, 단순한 주민등록·호적 확인만으로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함으로,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정보를 별도 DB로 구축하고 실종아동 DB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⁷⁾

7)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 참고자료 <DNA 유전정보 DB 해외 운영례> 참조

4. 검토 사항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법적 근거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해 보임.

실종아동법은 아동, 치매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여기에 신원불상 변사자를 포함시킬 경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이 일반적인 신원 확인의 범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반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국가 차원의 DNA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동 법률에 신원불상 변사자의 유전자 정보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데이터베이스 활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하는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명칭은 「디엔에이법」상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와 「실종아동법」상의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로 구분되나, 양 제도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관장 주체 및 보관주체가 경찰청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일치하며, 특정 염기서열을 검사·분석하여 수치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기재·저장하는 방식 또한 동일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하므로⁸⁾,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때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디엔에이법」을 함께 개정해야만 동 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도 현재 신원불상변사자 발견 시 경찰이 「디엔에이법」을 근거로 유전자검사 대상물을 채취·검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실종아동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법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미 유전자 채취·관리 근거를 두고 있는 「디엔에이법」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실종아동법」은 데이터베이스화할 정보를 ‘유전정보’⁹⁾라고만

8) 「디엔에이법」

제15조(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실종아동법」 제2조(정의)

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디엔에이법」에서와 같이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처럼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¹⁰⁾

둘째, 개정안은 유전정보의 이용 목적에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문구는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상 허용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해당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명확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반면, 보건복지부는 유전자 등록이 본래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판·수사 목적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실종아동 가족들의 채취 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셋째, 신원불상 변사자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안 제14조의6)와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2.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 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관련해서는 삭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를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삭제 시점이 보호자 의사에 과도하게 좌우되어 행정적 혼란이나 불필요한 장기 보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신원불상 변사자가 실종아동 등으로 판명되어 보호자가 신원을 확인한 경우에는 채취·보존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자료]

1. 디엔에이법, 실종아동법에 따른 유전정보 DB 현황

구 분	법적 근거	사무총괄	채취 주체	보관 방법
범죄현장 유전정보 DB ¹⁾ (신원불상변사자 포함)	「디엔에이법」 제7조	경찰청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법 제10조, 국과수 위탁 ⁴⁾
구속피의자 유전정보 DB ²⁾	「디엔에이법」 제6조	검찰총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법 제10조, 국과수 위탁
수형인 유전정보 DB ³⁾	「디엔에이법」 제5조	경찰청장	검사 (수용기관의 장에게 위탁 가능)	법 제10조, 국과수 위탁
실종아동등 유전정보 DB ⁵⁾	「실종아동법」 제11조	경찰청장	경찰청장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채취)	법 제11조제2항, 국과수가 보관 (위탁X, 국과수의 소관사무로 규정)

1) 디엔에이법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범죄현장등”이라 한다)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1.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2. 범죄의 피해자 신체의 내·외부에서 발견된 것
3.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된 것
4.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

2) 디엔에이법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디엔에이법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11. (생략)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다.

4) 디엔에이법 제10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2.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디엔에이감식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실종아동법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2.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②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국외수)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DNA 유전정보 DB 해외 운영례(경찰청 제출)

<미국>

- 전국적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종사건의 수사에 활용
-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를 위한 DNA색인연계시스템(Combined DNA Index System, CODIS)에서는 실종자를 포함하여 장기미제사건의 용의자, 수형인의 범죄자 등의 DNA를 총망라하여 관리(연방정부)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실종사건 수사를 위한 “국가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National Missing Person DNA Database, NMPDD)”도 운영(FBI)
- NMPDD에는 실종자와 관련된 인물들의 유전자정보가 모두 입력되고 있으며, 실종자DB, 실종자 가족DB, 신원불상 변사자 DB로 나눠 관리.
-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1993)」에 근거하여 범죄수사나 실종자 또는 대형재난 현장의 희생자 등의 신원확인을 위한 디엔에이 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중
- 대상 : 범죄현장의 증거, 피체포자 등, 성범죄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나 신체의 일부, 실종자, 실종자의 친척 등

<독일>

- 실종자 데이터뱅크(Vermi/Utot) 설치운영(경찰)
- 경찰정보시스템(INPOL)¹¹⁾에 실종자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가 실종자데이터뱅크(Vermi/Utot)에 입력됨
- 실종자 데이터뱅크(Vermi/Utot)에 저장된 신원미상 시신이 실종자와

11) INPOL은 독일 연방형사청(BKA)이 관리하는 중앙 범죄 정보 시스템으로, 실종자, 신원불상 변사자, 범죄 용의자, 수형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동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특징적 요소들을 비교하고, 신원
확인을 장담할 수 없는 경우 디엔에이분석을 실시